

#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8. 28 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6. 9. 25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6. 9. 27(수) 제13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9.27) 상정·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가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강원도세, 평창군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 고액·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.(안 제17조의2제1항)
-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.(안 제17조의2제2항)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

- 지방세에 대하여도 「지방세법」 제69조제1항을 근거로 우리 평창군세조례 제17조의2에 1억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

## 나. 검토결과

### ○ 자구·체계·형식 측면에서 보면

- 제안문에서 주요골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기재하고 그 설명 다음에 소괄호내에 그 근거조항을 표기하여야 하나 근거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
- 본문에서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와 항간에는 항앞에 한타 띄어쓰기를 하여야 하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
- 또한 특정규정은 없으나 통례상 항간의 줄은 붙임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됨

### ○ 기타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## 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## 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## 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 :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**

#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6. 8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1억원 이상 고액.상습채납자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명단공개와 관련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세조례를 개정하려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강원도세, 평창군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 고액.상습채납자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
- 나.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관계법령 : 별첨
- 나.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입법예고 :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
- 라.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고액.상습채납자 명단공개) ①군수는 「지방세법」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.상습채납자(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)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제17조의2(고액.상습채납자 명단공개)</p> <p>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.상습채납자(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채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)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## 관 제 법 령

□ **지방세법 제69조의2(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가 1억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(이하 "채납정보"라 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채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자의 채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채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,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.

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5.12.31]

□ **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2 (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)**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채납액(가산금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

2.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,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

2.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

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⑥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,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⑦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·상호(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), 연령, 직업, 주소, 체납액의 세목·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,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5.12.31]

□강원도세조례제9조의2(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)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장은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,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

2.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

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6. 5. 12]

제17조의2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·상습체납자(도세 및 시·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)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 업무는 시장·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. 이 경우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·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6. 5. 12]